

# 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2-356호

##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IBK투자증권(주)

## 2. 조치내용

- 기관에 대한 조치 : 과태료 1,270백만원 부과

## 3. 조치이유

### 가. 지적사항

#### 1.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

- IBK투자증권(주)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직원 ▲명은 20xx.xx.xx. ~20xx.x.xx.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△인(개인 △명, 법인 △개 업체)에 대해 ●●●●● 사모펀드 ◀건(◀ ◀ 억원), ◆◆◆◆◆ 사모펀드 ▶건(▶ ▶ 억원) 등 총 ▶건(▶ ▶ 억원)을 판매하는 과정에서

- 상기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 설명서를 “교부받았음” 또는 “수령거절함”으로 투자자로부터 확인 받지 아니하는 등 「자본시장법」상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

#### 2.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

- IBK투자증권(주)는 영업점 직원 ▶인은 20xx.xx.x. ~20xx.x.x. 기간

중 고객을 대상으로 ▷▷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,

-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거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

#### 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제71조 제7호, 제449조 제1항 제29호,
- 舊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제57조 제6항, 제249조의5, 제449조 제1항 제25호의2
-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14호, 제390조, [별표22]
- 舊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」 제60조 제3항, 제271조의6 제1항, 제390조, [별표22]